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 . . .	
연월일	(제 회)	

국 민 생 명 안 전 위 원 회 의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내지 제5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내지 제7조)

-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 내지 제9조)
-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마. 기타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겸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명안전 관련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 및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생명안전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 생명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
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
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
회 및 세미나 개최,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의 위
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
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
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